

특약 개정 대비표

- 약관명: 「연금하나 월복리 적금」 특약
- 변경 시행일: 2025년 11월 28일 (금)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- 주요 변경 내용: 우대금리 항목 신설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													
제1조 ~ 제8조 <생 략> 제9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은 가입후(또는 재예치후) 매 계약기간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최대 연1.0%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단,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 <table><tr><th>우대항목</th><th>내 용</th></tr><tr><td>연금하나 우대 (연 0.90%)</td><td>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1/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^(주) 보유한 경우 (월 1회 이체)</td></tr><tr><td>온라인.재예치 우대 (최대 연 0.10%)</td><td>이 예금을 온라인채널(인터넷뱅킹/스마트폰뱅킹)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</td></tr></table> (주) 연금입금 인정기준 : - 공적연금 : 4대연금(국민,공무원,군인,사학)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- 개인연금 :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연금, 연금신탁, 연금펀드 - 기타연금 :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	우대항목	내 용	연금하나 우대 (연 0.90%)	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1/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^(주) 보유한 경우 (월 1회 이체)	온라인.재예치 우대 (최대 연 0.10%)	이 예금을 온라인채널(인터넷뱅킹/스마트폰뱅킹)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	제1조 ~ 제8조 <좌 동> 제9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은 가입후(또는 재예치후) 매 계약기간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최대 연1.2%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단,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 <table><tr><th>우대항목</th><th>내 용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연금하나 우대 (최대 연 1.10%)</td><td>①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1/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^(주) 보유한 경우 (월 1회 이체) (연 0.90%)</td></tr><tr><td>②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2/3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^(주) 보유한 경우 (월 1회 이체) (연 1.10%)</td></tr><tr><td>온라인.재예치 우대 (최대 연 0.10%)</td><td>이 예금을 온라인채널(인터넷뱅킹/스마트폰뱅킹)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</td></tr></table> (주) 연금입금 인정기준 : - 공적연금 : 4대연금(국민,공무원,군인,사학)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	우대항목	내 용	연금하나 우대 (최대 연 1.10%)	①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1/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^(주) 보유한 경우 (월 1회 이체) (연 0.90%)	②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2/3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^(주) 보유한 경우 (월 1회 이체) (연 1.10%)	온라인.재예치 우대 (최대 연 0.10%)	이 예금을 온라인채널(인터넷뱅킹/스마트폰뱅킹)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	우대 금리 항목 신설
우대항목	내 용														
연금하나 우대 (연 0.90%)	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1/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^(주) 보유한 경우 (월 1회 이체)														
온라인.재예치 우대 (최대 연 0.10%)	이 예금을 온라인채널(인터넷뱅킹/스마트폰뱅킹)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														
우대항목	내 용														
연금하나 우대 (최대 연 1.10%)	①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1/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^(주) 보유한 경우 (월 1회 이체) (연 0.90%)														
	②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2/3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^(주) 보유한 경우 (월 1회 이체) (연 1.10%)														
온라인.재예치 우대 (최대 연 0.10%)	이 예금을 온라인채널(인터넷뱅킹/스마트폰뱅킹)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														

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'연금' 또는 '보험사명'이 기재된 자금 ②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. 금리우대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. 단, 신규 가입 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,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제10조 ~ 제11조 <생 략> 부 칙 <생 략> <신 설>	- 개인연금 :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연금, 연금신탁, 연금펀드 - 기타연금 :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'연금' 또는 '보험사명'이 기재된 자금 ②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. 금리우대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. 단,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,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제10조 ~ 제11조 <좌 동> 부 칙 <좌 동> <u>5. 이 특약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.</u>	부칙 추가
---	--	------------------